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17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. 20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박희승 · 이성윤
이정문 · 안호영 · 임오경
한병도 · 이원택 · 김 윤
임미애 · 최혁진 · 정동영
이언주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비전을 구체화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하고,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가.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특례 규정(안 제41조의2)

도지사가 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체적으로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장소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.

나.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(안 제78조의2)

도지사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, 제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에 대해 국가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
다.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대한 특례 규정(안 제63조의2)

도내 글로벌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자 등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.

라. 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 규정(안 84조의2)

도지사가 농지 이용증진 사업의 시행자를 선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.

마.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 규정(안 제 102조의2)

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도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해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편 제3장 제1절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1조의2(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·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.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⑥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43조제1항 전단 중 “지정·해제”를 “지정·변경·해제”로 한다.

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3조의2(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관한 특례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

1.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근거하여 전북자치도 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

2. 연구경력이 풍부하고, 실적 등이 우수할 것

3.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

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1항의 계속 적용을 요청하

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계속 적용여부에 관한 결정을 따라야 한다.

제3편 제4장 제2절에 제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8조의2(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가 추진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의 우수기업에 대해 지정할 수 있으며, 도내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도지사 지정 및 해제의 기준·방법,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.

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검토하고 전북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 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4조의2(농지 이용증진에 관한 특례) ①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는 「농지법」 제9조 및 제23조 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농지를 위·수탁받거나 임대차(사용대차를 포함한다)하여 경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「농지법」 제10조 및 제61조제1호와 제2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.

② 제1항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은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사업범위

내에서 도조례로 정한다.

제5편 제1장에 제10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2조의2(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.

제1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31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
2.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

3.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

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u><신 설></u>		<u>제41조의2(자동차 임시운행 허가</u> <u>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</u> <u>「자동차관리법」 제27조제1항</u> <u>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·</u> <u>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</u> <u>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</u> <u>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</u> <u>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</u> <u>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</u> <u>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</u> <u>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</u> <u>수 있다.</u> 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</u> <u>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</u> <u>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</u> <u>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 번</u> <u>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</u> <u>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</u> <u>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</u> <u>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</u> <u>다.</u> <u>④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</u> <u>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</u>		

현행	개정안
제43조(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) ① 도지사는 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2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를 <u>지정·해제</u>할 수 있다.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	<u>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.</u> ⑤ <u>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 동안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⑥ <u>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</u> ⑦ <u>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1조제2항·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</u> 제43조(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등 특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지정·변경·해제</u>----- -----

현행	개정안
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② ~ ④ (생략) <u><신설></u>	-----.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<u>제63조의2(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의 체류에 관한 특례) ① 「출입국관리법」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국인 중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대하여 영주자격 요건의 일부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.</u> <u>1.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근거하여 전북자치도 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 대학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</u> <u>2. 연구경력이 풍부하고, 실적 등이 우수할 것</u> <u>3. 전북자치도 내에 있는 연구기관 또는 기업 등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것</u> <u>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례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마다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</u>

현행	개정안
<신설>	생산자단체는 「농지법」 제9조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의 농지를 위·수탁받거나 임대차(사용대차를 포함한다)하여 경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농지의 소유자는 「농지법」 제10조 및 제61조제1호와 제2호를 적용받지 아니한다. ② 제1항의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은 농지법 제15조 각 호의 사업범위 내에서 도조례로 정한다. 제102조의2(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등에 관한 특례) ① 도지사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 및 「지방공기업법」 제63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대응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에 대하여 임용 우대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
제112조(자율학교 운영의 특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 ②·③ (생략)	② 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자녀 양육자의 임용 우대 등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. 제112조(자율학교 운영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제131조(과태료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31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2. 제4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3. 제41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관할구역외의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행한 자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·징수한다.	③ 제4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 -----.